

2004. 7. 19(월) 10:00
제87회김제시의회정례회

시정질문 서면답변서

- 질문일시 : 2004. 7. 19(월) 10:00
- 질문의원 : 안기순의원
- 답변자(시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내용
 - 제일먼저 도시가스가 공급되어야하는 시영영구임대아파트는 도시가스공급이 되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김 제 시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 안기순 의원

답변자 : 시장(서면)

【 질 문 요 지 】

○ 안기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의거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생산품 구매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경쟁계약특례에 의해 관내 재조업체의 제품을 구매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지적하셨고,

둘째, 시영영구 임대아파트 주변의 민간 임대아파트는 사용자 부담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제일먼저 도시가스가 공급되어야 하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영영구임대아파트는 공급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 답 변 내 용 】

○ 먼저 2003년 관급자재 구입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 2003년도 공사와 관련된 관급자재 구매 품목을 보면 레미콘, 아스콘, 이형철근, 용접철망, 식생블럭, PE관,수로관, 흙관, 가로등 자재 등으로 크게 구분 됩니다.

○ 이에 대한 구매방법을 보면 2003년 총 구매액 10,549,541천원중 우리시 관내 생산제품을 8,611,757천원(81.6%)을 구매 했으며

도내 생산제품 구매는 242,179천원(2.3%)이고 도외에서의 구매는 1,695,605천원(16.1%)입니다.

○ 참고로 도내에서 구매한 제품은 일부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고 도외에서 구매한 (이형철근, 가로등자재 등) 제품은 우리시는 물론 도내에서도 생산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 둘째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후~~호 "라"목에 의거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실시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도

농공단지 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물자에 대하여 2003년은 5,000만원이상,

2004년부터는 7,000만원 이상의 구매는 조달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셋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 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구매 5억 미만은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거

구매 예정금액 7,000만원 미만은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7,000만원 이상은 조달구매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관내 생산제품 구매에 더욱 노력할 것이며

조달 구매요청 품목에 대해서도 조달청과 유기적인 협조로 우리관내 업체에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 둘째로, 주변의 편의를 위해서 제일먼저 도시가스가 공급되어야 하는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영영구임대아파트는 공급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에서 건립·운영중인 검산동 1030 - 2번지상 검산시영영구임대아파트는 1994. 12월 준공되어 총 200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 검산 시영 영구임대아파트건립 당시 난방설비는 개별 기름보일러로 설치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보일러 내구연한 경과와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세대에 대하여 시에서 부담 가스보일러로 교체 현재 65세대가 가정용 LPG 가스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검산시영영구임대아파트 도시가스공급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각 세대별 가스배관 설비 교체비 80백만원 가스보일러 교체비용 68백만원 시설분담금 12백만원 등 총 160백만원이 소요됩니다.

○ 입주민의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1회 추경시 예산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시영영구임대아파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